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614호
- 나. 발 의 자 : 이종배 의원(찬성자 19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## 2. 제안이유

-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, 목적 및 관광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에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, 노령,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및 목적, 책무, 관광지원기본계획, 민간참여의 촉진, 예산편성,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).

##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‘관광약자’ 라는 용어가 ‘관광취약계층’ 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조례 제명, 목적 및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, 노령,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##### 나.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의 정의

- 관광약자·관광취약계층 용어에 대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제314회(2022.9.22.) 임시회에서 관광약자, 무장애 관광이라는 용어가 신설되었으며, 제316회 임시회(2023.2.9.)에서 ‘관광취약계층’ 이라는 용어에 ‘관광약자’ 를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령과의 용어체계 혼선을 이유로 미반영 되었음.

##### <관광약자·관광취약계층 용어 법제화 현황>

제안 내용	일시	발의의원
• 관광약자, 무장애 관광이라는 용어 신설	제314회 임시회(2022.9.2.)	아이수루 의원
• 관광취약계층 용어에 관광약자를 포함 → 법령과의 용어 체계 혼선(미반영)	제316회 임시회(2023.2.9.)	박성현 의원
• 관광취약계층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관광약자로 조례 제명 등을 수정	제318회 임시회(2023.4.)	이종배 의원

- 이에 동 개정안은 ‘관광취약계층’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‘관광약자’로 제명 및 목적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임.
- 현행 조례에서도 ‘관광약자’를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(2022.10.17.개정)하여 관광취약계층<sup>1)</sup>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.
- 따라서 ‘관광취약계층’보다 광의의 개념인 ‘관광약자’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과 일괄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.
- 또한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‘관광약자’로 조례 제명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“약자와의 동행”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을 준용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.

**붙임 1****타 지자체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지원 조례 현황****타 지자체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지원 조례 현황**

(23. 2.24. 기준)

연번	자치단체	조례명
1	서울	서울특별시 <b>관광취약계층</b> 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
2	부산	부산광역시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3	대구	대구광역시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<b>무장애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4	인천	인천광역시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5	광주	광주광역시 <b>무장애 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6	대전	대전광역시 <b>관광취약계층</b> 관광활동 지원조례
7	울산	울산광역시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8	세종	세종특별자치시 <b>무장애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9	경기	경기도 <b>무장애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10	강원	강원도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11	충북	충청북도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12	충남	충청남도 <b>무장애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13	전북	전라북도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14	전남	전라남도 <b>무장애관광</b>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15	경북	경상북도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16	경남	경상남도 <b>관광약자</b> 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17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<b>관광약자</b> 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
○**관광취약계층**: 2개소,      ○**무장애관광**: 6개소,      ○**관광약자**: 10개소

※ 중복사용 1개소(대구광역시)

## 타 지자체 조례의 관광취약계층 · 관광약자 정의 현황

연번	자치단체	조례명	대상에 대한 정의(①관광취약계층, ②관광약자)
1	서울	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2	부산	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3	대구	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영유아 동반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4	인천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5	광주	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6	대전	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	②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노인, 임산부, 영유아동반가족
7	울산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8	세종	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9	경기	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10	강원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(일시적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), 정보 및 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
11	충북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
12	충남	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② 관광취약계층과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13	전북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14	전남	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	①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 ②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, 노령,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15	경북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
16	경남	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17	제주	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	②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

## 붙임 2

## 집행부 검토의견

의안번호  
0510

###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이종배 의원	2023.3.29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<b>&lt;제안이유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, 목적 및 관광 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, 노령,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</li> </ul> <p><b>&lt;주요 요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의 제명 및 목적, 책무, 관광지원기본계획, 민간참여의 촉진, 예산편성,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(안 제1조, 제3조, 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)</li> </ul>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3.3.29. 이종배 의원 발의</li> <li>- (찬성) 강석주, 김기덕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남궁역, 문성호, 민병주, 박환희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아이수루, 유정희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환 의원(19명)</li> </ul>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 제명, 목적 및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, 노령,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함.</li> </ul>				
대응방안	○ 별도 대응 없음(원안 가결)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후계획					
담당부서	관광산업과	팀장	홍승현(☎2133-2781)	담당	김종욱(☎2133-2787)